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02
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2. 4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2. 1. 17 개정 ·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·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,
-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 ·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12. 3. 9 ~ 2012. 3. 30. 결과 - 특기할 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” 을
“제8조제3항,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”으로 하며,
“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”을
“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
지정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
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
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
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
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
을 지정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
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.
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3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 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</p>

관계 법령

유통산업발전법 [일부개정 2012. 1. 17 법률 제11175호]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.17]